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425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9. 한 재산세 금 5,254,450원의 부과처분 중 4,8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가.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른 경감 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감액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윤아영

판사 정우용